
VI. 결 론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규제는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제도적 측면에서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0년 보험종목별 진입 허용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모형, 틈새시장에 특화된 전문화된 단종보험회사(mono-line insurer)의 시장진입이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은 경쟁도가 증가하여 온라인채널에 따른 보험료 감소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은 개선되고 시장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권원보험이나 법률비용보험회사 등의 파급은 거의 미미하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사용하는 보험회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 간 특정 보험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은 증가하였지만 시장전체의 경쟁도를 측정하여 보면 여전히 독점적 구조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의 시장행동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모두 공정위로부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독과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진입규제와 가격 및 상품규제가 동시에 완화됨에 따라 경쟁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성과 측면에서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수익성도 다른 금융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요약해보면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었지만 손해보험시장에서는 과점적 구조의 변화가 없었고, 시장행동에서 경쟁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격과 상품 측면에서 비경쟁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시장구조가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자본금요건 등이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2008년 진입규제의 개선안으로 진입은 용이하게 하고 퇴출은 신속하게 하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규제와 퇴출규제는 부실보험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이후 정비되거나 논의되지 못하였고 현재의 보험감독체제인 리스크중심감독에도 접목되지 못하는 진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 진입규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최근 상법개정을 반영하여 국가정책과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험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하며,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제고함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제시했다. 우선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종목의 구분 등 관련법규를 명확히 하고, 주요국에서는 캡티브나 공제, 상호교환보험회사 등 다양한 보험회사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마련하며, 종목별 사업방법서 등을 제외하여 진입서류를 간소화하며, 자본금요건은 국내의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퇴출규제는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볼 때 IMF 구제금융 이후 많은 부실보험회사가 정리되면서 비교적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도적 정비가 되지 못해 관련 법규가 혼재되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퇴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계약이전, 사업양도, 합병과 인수, 청산과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보험계약이전의 경우, 현재는 전부이전만 허용되나 파산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도 일부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는 보험종목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전환하여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일부이전은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퇴출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퇴출보험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의 처분순서를 청산부분에서 미국 뉴욕주처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